

●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직제규정

개 정	2013. 3. 20.	제 194 호	제 정	2004. 9. 3.	제 2 호
개 정	2013. 9. 27.	제 202 호	개 정	2005. 5. 6.	제 26 호
개 정	2013. 12. 2.	제 205 호	개 정	2006. 1. 16.	제 31 호
개 정	2014. 2. 28.	제 224 호	개 정	2006. 11. 26.	제 46 호
개 정	2014. 11. 4.	제 237 호	개 정	2007. 2. 20.	제 52 호
일부개정	2015. 7. 1.	제 251 호	개 정	2007. 12. 28.	제 60 호
일부개정	2016. 6. 30.	제 273 호	개 정	2008. 8. 1.	제 68 호
일부개정	2018. 1. 1.	제 292 호	개 정	2008. 11. 24.	제 75 호
일부개정	2018. 8. 23.	제 311 호	개 정	2009. 9. 29.	제 103 호
일부개정	2018. 9. 21.	제 313 호	개 정	2009. 12. 30.	제 110 호
일부개정	2018. 11. 16.	제 316 호	개 정	2010. 4. 14.	제 126 호
일부개정	2019. 7. 17.	제 334 호	개 정	2010. 12. 31.	제 134 호
			개 정	2011. 2. 17.	제 136 호
			개 정	2011. 5. 26.	제 143 호
			개 정	2011. 10. 28.	제 159 호
			개 정	2012. 4. 4.	제 168 호
			개 정	2012. 6. 28.	제 177 호
			개 정	2012. 12. 18.	제 187 호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5. 7. 1.>

제2조(적용범위)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의 직제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 2007.2.20.><개정 2011.2.17.><개정 2015. 7. 1.>

제3조(직제의 개편) 공단의 기구 및 직제의 신설·개편·폐지에 관한 사항은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15. 7. 1.>

제 2 장 구성원 및 기능

제4조(구성원) 공단에 이사장, 이사 및 감사와 직원을 둔다.

제5조(이사장)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제6조(이사) ①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<개정 2006. 1. 16.><개정 2009. 12. 30.>

② 비상임 이사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정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 2015. 7. 1.>

제7조(감사)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

제8조(직원) ① 공단의 직원은 사무직, 기술직, 체육전문직, 보육직, 업무직, 조리직으로 구분한다.<개정 2008.8.1.><개정 2008.11.24.><개정 2015. 7. 1.><개정 2018. 1. 1.><개정 2018. 11. 16.>

② 사무직의 직급은 2급부터 9급까지로 하며, 기술직 및 체육전문직의 직급은 5급부터 9급까지, 보육직 중 원장의 직급은 6급, 조리직은 9급으로 구분한다.<개정 2006.1.16><개정 2007.12.28.><개정 2008.11.24><개정 2009.12.30.><개정 2012.12.18.><개정 20

14.11.4.><개정 2015. 7. 1.><개정 2018. 1. 1.>

③ 공단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과 이 규정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, 시간제근로자 등을 직접 또는 용역업체 인력을 고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.<개정 2005.5.6.><개정 2012.12.18.><개정 2013.12. 2.><개정 2014.11.4.><개정 2015. 7. 1.><개정 2018. 8.23.>

제9조(직무대행)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이사, 본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10.4.14.>

② 상임이사, 본부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임 이사인 서울특별시 성동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기획재정국장, 안전건설교통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06.1.16><개정 2010.4.14.><개정 2014.2.28.><개정 2015. 7. 1.>

제10조(고문 및 자문위원 등) ① 이사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·자문하기 위하여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 공단의 고문 또는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5. 7. 1.>

제 3 장 조 직

제11조(기구) ① 공단의 기구는 별표 1과 같다.<개정 2006. 1. 16.><개정 2007. 12. 28.><개정2008. 11. 24.><개정2009. 12. 30><개정2011. 2. 17.><개정2011. 10. 28.><개정2012. 6. 28.><개정 2013. 9. 27.><개정 2014. 2. 28.><개정 2015. 7. 1.>

② 공단의 각 팀에는 하부기구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③ 공단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과 정원표의 인력 범위에서 임시기구 또는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15. 7. 1.>

제12조(직위) ① 본부장은 사무직 2급 또는 개방형 계약직(2급 상당)으로 보하되, 상임이사가 본부장을 겸할 수 있으며,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무를 분장하고, 개방형 직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. <2005.5.6 단서 신설><개정 2006.1.16><개정 2007.12.28><개정 2009.9.29><개정 2009.12.30><개정 2011. 2.17><개정 2011. 5.26><개정 2013.12. 2.><개정 2014.2.28><개정 2015. 7. 1.>

1. 본부장은 경영혁신팀, 시설관리팀, 환경개선팀, 주차사업팀, 생활체육팀, 열린체육팀 업무를 총괄하고, 공단 내부 각종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 주관 및 심의·

의결권을 행사한다.<개정 2014.2.28><개정 2015. 7. 1.><개정 2018. 1. 1.>

2. <개정 2014.2.28><삭제 2015. 7. 1.>

② 각 실·팀의 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, 필요시에는 하위 직급의 직원을 보할 수 있다.<개정 2010.2.17.><개정 2012.12.18.><개정 2013. 9.27><개정 2014.2.28><개정 2015. 7. 1.><개정 2018. 1. 1.>

③ 각 실·팀장은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<2010.4.14. 본항 신설><개정 2018. 1. 1.>

④ 제11조제2항에 따른 각 실·팀의 소관별 시설의 책임자로 5급 또는 6급으로 사업소의 장 등 책임자를 보하며, 필요시에는 하위 직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.<2011. 5.26 본항 신설><개정 2015. 7. 1.><개정 2018. 1. 1.>

제13조(정원) ① 공단 정규직 직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고, 실·팀별 정원은 내규에서 따로 정한다.<개정 2005.5.6><개정 2006.1.16><개정 2007.2.20.><개정 2015. 7. 1.><개정 2018. 1. 1.>

② 이사장은 직무의 종류·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규직 2~4급, 5~6급, 7급 이하 정원을 각각 통합·운영할 수 있다.<신설 2013. 3.20.><개정 2015. 7. 1.><개정 2018.9.21.>

제 4 장 직무분장

제14조(경영혁신팀) 경영혁신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07. 2. 20.><개정 2007. 12. 28.><개정 2008. 11. 24.><개정 2011. 2. 17.><개정 2015. 7. 1.><개정 2018. 1. 1.><개정 2018.9.21.>

1. 중장기 경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<개정 2007.12.28.>

2. 경영분석 및 경영평가, 직원평가에 관한 사항<신설 2015. 7. 1.>

3. 사무혁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
4.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

5. 정관 및 사규에 관한 사항

6. 소송·등기 및 그 밖의 법무관련 사항<개정 2007.12.28.><개정 2015. 7. 1.>

7. 신규사업의 개발 및 위·수탁에 관한 사항<신설 2007.12.28.>

8. <신설 2007.12.28.><삭제 2012.6.28>

9.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<신설 2007.12.28.>

10.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<개정 2007.12.28.><개정 2008.11.24.>

11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<개정 2008.11.24.>

12. 재무,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<개정 2008.11.24.>

13. 공사, 용역,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<개정 2008.11.24.>

14. <개정 2007.12.27.><개정 2008.11.24.><삭제 2012.6.28>

15. <개정 2008.11.24.><제14조의3 11호로 이동 2018. 1. 1.>

16. 채용, 인사, 교육, 복무 및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<개정 2007.12.28.><개정

제15조(시설관리팀) 시설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07.

12.28.><개정 2011. 2.17.><개정 2015. 7. 1.><개정 2018. 1. 1.><개정 2018. 8.23.>

1. 성동종합행정마을, 공단본부, 용답어린이집, 대현경로복지관, 구 보건소, 왕십리도선동 공공복합청사, 현수막지정게시대, 성동안심상가빌딩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설물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<개정 2007.2.20.><개정 2015. 7. 1.><개정 2018. 1. 1.><개정 2018. 8.23.><개정 2019. 7. 17.>

2. 성동종합행정마을, 공단본부 부설주차장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<신설 2015. 7. 1.>

3. 성동종합행정마을, 공단본부 청사 임대 및 대관사업에 관한 사항<개정 2007.2.20.><개정 2008.8.1.><개정 2011.2.17.><개정 2015. 7. 1.>

4. 청사 관련 신규사업 개발 및 위·수탁에 관한 사항<개정 2007.2.20.><개정 2015. 7. 1.>

5. <개정 2015. 7. 1.><삭제 2018. 1. 1.>

6. <삭제 2015. 7. 1.>

7. 부서 운영에 관한 사항

8. 부서 업무관련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

9. <삭제 2013.12. 2.>

10. <신설 2007.12.28><개정 2008.11.24.><삭제 2015. 7. 1.>

11. <개정 2010.12.31><삭제 2015. 7. 1.>

12. <신설 2010.12.31><제15조의2 6호로 이동, 2011. 2.17>

13. <신설 2010.12.31><삭제 2015. 7. 1.>

14. <신설 2010.12.31><제15조의2 7호로 이동, 2011. 2.17>

15. <삭제 2008.11.24.><11호에서 이동, 2010.12.31.>

16. <신설 2012.6.28.><삭제 2015. 7. 1.>

17. 구내식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<신설 2012.6.28.>

제15조의2(환경개선팀) 환경개선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본조신설 2011.2.17><개정 2015. 7. 1.><개정 2018. 9. 21.>

1. 보도상 시설물 물청소, 공중화장실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<개정 2013.12. 2><개정 2015. 7. 1.><개정 2016. 6. 30.>

2. 구 환경개선 관련 사업 위·수탁에 관한 사항<개정 2015. 7. 1.>

3. <삭제 2013. 12. 2>

4. <삭제 2015. 7. 1.>

5. <삭제 2015. 7. 1.>

6. <제15조 12호에서 이동, 2011. 2.17><삭제 2018. 1. 1.>

7. 성동구 자원회수센터 및 재활용센터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<제15조 14호에서 이동, 2011. 2.17><개정 2014.11.4.><개정 2015. 7. 1.><개정 2018. 9. 21.>

8. 부서 운영에 관한 사항

9. 부서 업무 관련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

제16조(주차사업팀) 주차사업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거주자우선주차제, 공영주차장, 건인보관소, 자전거체험학습장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<개정 2007.2.20.><개정 2015. 7. 1.>
2. <삭제 2015. 7. 1.>
3. <개정 2007.2.20.><삭제 2015. 7. 1.>
4. <삭제 2015. 7. 1.>
5. 주차시설 관련 신규사업개발 및 위·수탁에 관한 사항
6. 주차관리원의 배치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7. 주차요금의 부과·징수 및 정산관리에 관한 사항<개정 2007.2.20.>
8. 주차시설, 장비의 기계화, 전산화에 관한 사항
- 9~10. <삭제 2007.2.20.>
11. 주차장내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 등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<개정 2015. 7. 1.>
12. 주차표, 정기관 등 주차사업 운영 관련 모든 서식의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<개정 2015. 7. 1.>
13. 부서 운영에 관한 사항
- 14~15. <삭제 2007.2.20.>
16. 부서 업무 관련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<개정 2015. 7. 1.>
17. <삭제 2015. 7. 1.>

제17조(생활체육팀) 생활체육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15. 7.

- 1.><개정 2018. 1. 1.><개정 2018. 8.23.>
1.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, 대현산체육관, 살곶이 물놀이장, 살곶이 야구장, 금호스포츠허브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<개정 2007.2.20.><개정 2015. 7. 1.><개정 2018. 1. 1.><개정 2018. 8.23.>
2. 시설관리관련 위·수탁에 관한 사항<개정 2007.2.20.>
3.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4. 시설이용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
5. 체육사업 관련 신규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
6. 부서 운영에 관한 사항
7. 수입금의 부과·징수 및 정산관리에 관한 사항<개정 2007.2.20.>
8. 회원관리 및 회비수납에 관한 사항
9.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10.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
11.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
12. 기타 생활체육팀 시설에 관한 사항<개정 2007.2.20.><개정 2018. 1. 1.>

제18조(열린체육팀) 열린체육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신설 2018. 1.

- 1.><개정 2018. 8.23.>
1. 열린금호교육문화관, 마장국민체육센터, 금호공원체육관, 응봉테니스장, 마장테니스장, 응봉축구장·풋살장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<개정 2018. 8.23.>
2. 시설관리관련 위·수탁에 관한 사항
3.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
4. 시설이용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
5. 체육사업 관련 신규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
6. 부서 운영에 관한 사항
7. 수입금의 부과·징수 및 정산관리에 관한 사항
8. 회원관리 및 회비수납에 관한 사항
9.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10.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
11.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
12. 기타 열린체육팀 시설운영 관한 사항

<신설 2018. 1. 1.>

제18조의2(도서관운영팀) <삭제 2015. 7. 1.>

제19조(직무분장의 조정) ① 각 실·팀간 직무분장(업무분장)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정에 따른다.<개정 2015. 7. 1.><개정 2018. 1. 1.>

② 실·팀 단위 소속직원별 업무분장은 소속직원의 직종을 고려하여 해당 팀장이 결정한다. 다만, 소속직원의 직종과 다른 업무분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07.12.27.><개정 2015. 7. 1.><개정 2018. 1. 1.>

③ 각 실·팀은 상호 관련 있는 사무에 관하여 유기적으로 협의, 협조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7. 1.><개정 2018. 1. 1.>

제20조(직무수행과 책임) ① 공단의 임·직원은 분장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진다.

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21조(위임규정)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단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구확장) 공단의 사업규모가 추가 또는 확대시 공단의 기구를 확장하여 팀, 과, 부의 신설을 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. 5. 6. 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. 1. 16. 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7.2. 7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구청장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7.12.27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구청장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8.7.29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구청장승인일(2008.8.1.)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8.11.1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구청장승인일(2008.11.24.)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9. 9.2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구청장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9. 12.29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구청장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0. 4.14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구청장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0. 12.3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구청장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1. 2.17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구청장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1. 4.28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구청장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1. 10.19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구청장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2. 3. 15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구청장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2. 6. 20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구청장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2. 11. 20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구청장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3. 3. 1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구청장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3. 9. 27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구청장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3. 12. 2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구청장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4. 2. 28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구청장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4. 11. 4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구청장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5. 7. 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「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회계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제1항 중 “경영기획실”을 “경영지원팀”으로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경영기획실”을 “경영지원팀”으로, 같은 조 제5항 중 “경영기획실”을 “경영지원팀”으로 하고, 제56조 중 “경영기획실”을 “경영지원팀”으로, 제66조제2항 중 “경영기획실”을 “경영지원팀”으로, 제115조제3항 중 “경영기획실장”을 “경영지원팀장”으로 한다.

부칙(2016. 6. 30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구청장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8. 1. 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「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항제2호, 제7조, 제13조, 제17조제2항, 제23조제1항·2항, 제31조제1항제1호 중 “경영기획실장”을 “경영혁신팀장”으로 제6조제2호 중 “각 팀장”을 “각 실·팀장”으로 한다.

「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제안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경영지원팀장”을 “경영혁신팀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팀장”을 “실·팀장”으로 한다.

「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직인관리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경영지원팀”을 “경영혁신팀”으로 하고, 제6조제2항, 제8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4조제4항 중 “경영지원팀장”을 “경영혁신팀장”으로 한다.

「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직장동호회 운영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조 중 “경영지원팀”을 “경영혁신팀”으로 한다.

「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회계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제1항·3항·5항 중 “경영지원팀”을 “경영혁신팀”으로, 같은 조 제4항·5항 중 “팀장”을 “실·팀장”으로 한다.

제56조, 제66조제2항 중 “경영지원팀”을 “경영혁신팀”으로 제115조제3항 중 “경영지원팀장”을 “경영혁신팀장”으로 한다.

부칙(2018. 8. 2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구청장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8. 9.21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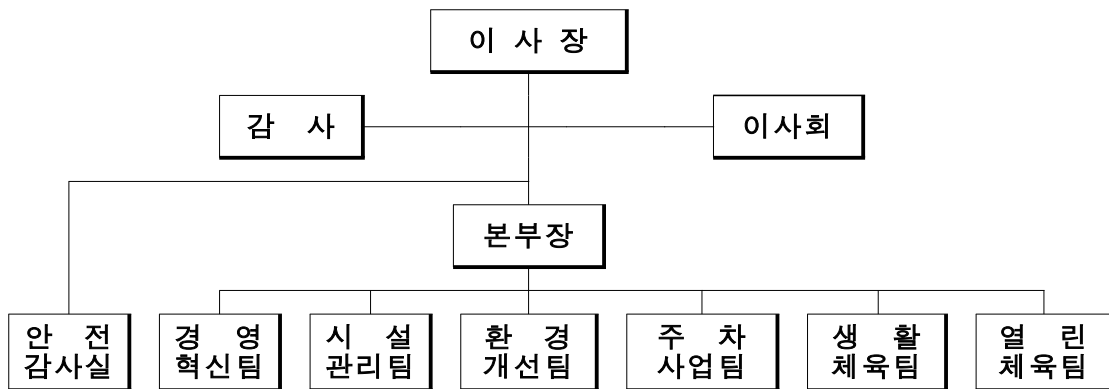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구청장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9. 7. 17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구청장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<개정 2006. 1. 16.><개정 2007. 2. 20.><개정 2007. 12. 28.><개정 2008. 11. 24.><개정 2009. 12. 30.><개정 2011. 2. 17.><개정 2011. 10. 28.><개정 2012. 4. 4.><개정 2012. 6. 28.><개정 2013. 9. 27.><개정 2014. 2. 28.><개정 2015. 7. 1.><개정 2018. 1. 1.>

기 구 표



※ 비상임 이사 (7명)

- 당연직 : 구청장이 지정하는 성동구의 국장 2명
- 사외직 : 세무 및 회계전문가 등의 민간전문가 5명

※ 비상임 감사 (1명) : 성동구의 감사담당관

[별표 2]<개정 2008. 8. 1.><개정 2008. 11. 24.><개정 2009. 9. 29.><개정 2009. 12. 30.><개정 2010. 12. 31.><개정 2011. 2. 17.><개정 2011. 10. 28.><개정 2012. 6. 28.><개정 2013. 3.20><개정 2013. 9.27><개정 2015. 7. 1.><개정 2018. 1. 1.><개정 2018. 9.21.><개정 2018. 11. 16.>

정원

[illegible]